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9
------	-----

2011. 6. 24.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년 10월 29일

나.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03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4일)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의 폐지와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은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공간정보체계, 사업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한 규정 신설함(안 제2조)
- 국가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서울시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3항)
- 관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서울시에 제출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공간정보 수수료 감면 기관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관협력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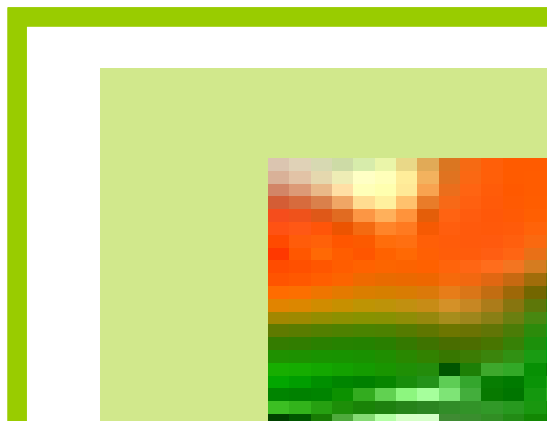
-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09. 7. 9 ~ 7. 28)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대상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배경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¹⁾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기존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2009.8.7)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공간정보체계에 있어 공간정보는 공간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존재양식 중에서 산업·행정·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본정보로서 유비쿼터스 국토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함. 참고로 국가공간정보는 산업·행정·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반임.



그 동안 주로 공공부문이 수집·가공·구축하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공공재(公共財) 성격이 강한 반면, 이를 민간이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산업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정부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정보목록의 대국민 공개 등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한 공간정보의 부가가치 창출로 공간정보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나. 주요 사항별 검토

1) 용어의 정의 등(안 제2조 및 제3조)

- 조례의 제명과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에서 정의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관련법에서는 “관리기관”의 정의에 있어, “관리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까지 확대하고 있음. 안 제2조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서는 민간기관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간정보의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²⁾ 공적 통제시스템 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자료협조, 보안관리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제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안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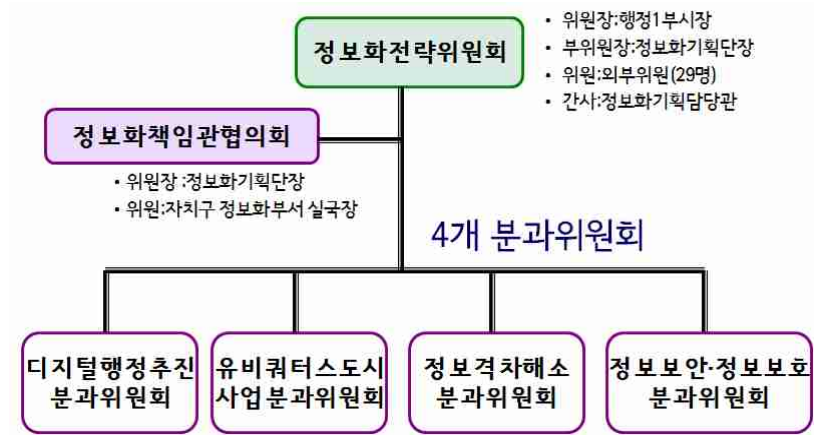
- 개정안은 서울시와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³⁾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참고로, 서울시와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정보화 추진사업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2) 국가공간정보의 법률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분야별정보화의 추진 :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전자적 민원처리, 디지털행정의 추진,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공간정보의 구축·활용, 유비쿼터스의 추진 등의 사업.

“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고, 영역별,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 두어 신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



3) 공간정보체계의 시행계획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하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들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장에게 제출토록하며,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는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의 수립시 정책의 효율성 확보 및 중복투자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간 협의 및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협의 및 조정절차가 없으므로, 향후 시행규칙에서 이러한 관리기관간 협의 및 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안 제6조는 공간정보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공간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간정보체계의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5) 공간정보의 목록관리(안 제9조)

- 안 제9조는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공간정보 활용에 따른 편익증진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공간정보의 표준 준수(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유통과 관련된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관리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간정보의 표준화는 효율적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임.
- 그러나,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이나, 안 제6조와 중복된 규정이므로 당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공간정보 표준준수에 대한 수정의견】

전부개정안	수정안
<p>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16조에 따라 <u>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0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야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u>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정보참조체계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제10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야한다.</p> <p><u><중복된 규정 삭제></u></p>

7) 중복투자의 방지(안 제11조)

- 개정안은 신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종류 및 규모, 구축범위 또는 구축지역,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구축방법 및 기간) 및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 등을 담고 있음.

이 조항은 예산낭비의 방지 및 효율적인 공간정보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8) 공간정보의 보급·활용 및 유통과 제공(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 14조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하되,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공개로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되,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아울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안 제 14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단서조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는 것이 법적 정합성 차원에서 타당할 것임.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수정의견】

전부개정안	수정안
<p>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p>	<p>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p>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다음과 같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상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제공대상 정보에 대한 수수료(안 제15조)

- 공간정보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서 정보제공 수수료 징수기준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별표의 징수기준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징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10) 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안 제16조)

- 개정안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으로 보안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음. 이는 내부통제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검토

- 동 전부개정안은 공간정보체계의 근간이 될 기본적 사항으로, 공간정보의 추진체계 및 공간정보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정보의 정보목록을 공개하여 활용·보급·유통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관련법률 및 시행령 등을 준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인용조항이 중첩되거나, 준용 법률에 대한 정합성 측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즉,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조항이 안 제10조제2항에서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안 제14조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인용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비공개대상정보'가 명확치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금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견은?

- 정보화기획단장 답변 : 안 제10조제2항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6조와 중복된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안 제6조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토록 하는 규정이고, 안 제10조는 공간정보참조체계에 관한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토록 하는 것이므로, 이 2가지 규정은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안 제14조에 대한 수정의견은 수용하겠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 준용 법률이 명확치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4조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인용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비공개대상정보'가 명확치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수정함.(제14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 2011년 6월 24일

발 의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준용 법률이 명확치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14조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인용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비공개대상정보'가 명확치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수정함.(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 하단 단서조항을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에서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p>	<p>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5.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7.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8.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9.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와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4조(공간정보사업의 추진)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의 추진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지리정보담당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9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영 제2조의 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한 목록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야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정보참조체계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투자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제3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보급·활용 촉진

제12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① 시장은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3조(공간정보 유통)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15조(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른법령에서 공간정보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3.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③ 수수료 징수방법 및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리정보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수립된 지리정보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본다.